

2008. 2. 13(수) 09:30

제150회 임시회 조례 등 개정 안 검토 보고서

《검 토 안 건》

- “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”
- “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”
- “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”
- “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”
- “성남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”
- “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”



의회운영위원회
전문위원 한신수

□ 안건명 :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(2007. 10. 4공포)됨에 따라
-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개정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 개정
 -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→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(안 제1조)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7조제3항 →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3항(안 제9조)

□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. 10.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전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문을 개정된 시행령의 관련 조문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.

□ 안건명 :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(2007. 5. 11공포)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(2007. 10. 4공포)됨에 따라
-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개정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조문 개정
 - 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15조의3 → 같은법 시행령 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35조(안 제1조)
 - 영 제15조 → 영 제33조(안 제2조)
 -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→ 지방자치법 제34조(별지 제1호 서식)

□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이 2007. 5.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면 개정 되어 시행되고 있으며, 같은법 시행령이 2007. 10. 4일 대통령령 제 20306호로 전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조문을 개정된 법과 시행령의 관련 조문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.

□ 안건명 :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(2007. 10. 4공포)됨에 따라
-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개정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 개정
 -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19조의4 →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54조(안 제1조)
 - 영 제19조의4 → 영 제54조(안 제5조)

□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. 10.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전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문을 개정된 시행령의 관련 조문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.

□ 안건명 :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(2007. 10. 4공포)됨에 따라
-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개정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 개정(안 제1조)
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→ 같은법 시행령 제39조

□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. 10.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전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문을 개정된 시행령의 관련 조문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.

□ 안건명 :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(2007. 10. 4공포)됨에 따라
-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, 동 규칙 제17조(준용규정)중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명칭변경 개정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제명 “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” 을 “성남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”으로 개정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 및 의회명 개정(안 제1조)
 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→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0조
 - 경기도 성남시의회 → 성남시의회
- 조례명 및 규칙명 개정
 - 경기도 성남시의회회의규칙 → 「성남시의회 회의규칙」(안 제16조)
 -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와 성남시의회회의규칙→ 「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와 「성남시의회 회의 규칙」(안 제17조)

□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. 10.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전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문을 개정된 시행령의 관련 조문에 맞추어 개정하는 한편 제명 등의 띄어쓰기와 기 개정된 조례명 등을 바로잡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

규칙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.

□ 안건명 :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□ 제안이유

- 위원장 선임방법을 개정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명확히 하고
-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 (2007. 9. 1공포)으로 관련 조례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조례명으로 개정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위원장 선임방법 개정(안 제2조제2항)
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 → 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- 조례명 개정(안 제4조제1항)
성남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 → 「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」

□ 검토의견

- 규칙 제2조제2항의 위원장 선임방법을 “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3(윤리특별위원회) 제3항 【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, 제6조제2항(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)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】 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기 개정 된 조례명을 바로잡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규칙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.